

[붙임3]

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과목 대체

|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등록 안내

○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

구 분	TOEFL		TOEIC	TEPS	G-TELP	FLEX
	PBT	IBT				
일반	530	71	700	340	65 (레벨 2)	625
청각장애인	352	-	350	204	-	375

- 2019.1.1.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, 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
- 2019.1.1.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, 일본에서 응시한 TOEIC, 미국에서 응시한 G-TELP는 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함
-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(TOEFL, TOEIC, TEPS, G-TELP)의 경우에는 **유효기간 만료 전에 성적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s://local.gosi.go.kr>)에 사전등록해야 함**(단, FLEX는 성적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기에 사전등록 불요)
 - TOEIC, TEPS, G-TELP :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
 - TOEFL :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매월 1일~10일 등록

*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

* 사전등록일 기준으로 각 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험성적만 등록가능
-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 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
- 청각장애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
- 성적 제출방법
 -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, 등록번호,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,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 사용해야 함
 -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**추가등록기간 [2024. 10. 28.(월) ~ 11. 1.(금)]**내에 **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(<https://local.gosi.go.kr>) “능력검정시험 성적제출” 메뉴에서 성적을 등록해야 함**
- 필요 시 진위확인을 위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

II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대상 범위

1.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기준

-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,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

※ 보청기 등 청력 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임

- ① '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(기준 청각장애 2·3급)'인 사람
② '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% 이하'인 사람(**진단서 반드시 제출**)

- ☞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[별표1]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(**기준 2·3급으로, 종전 듣기점수 제외 대상은 그대로 인정**)
☞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**장애인 중 청각장애의 정도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**

<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>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**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**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의한 **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사람**

2. 점수 기준

구 분	TOEFL(PBT)	TOEIC	TEPS	FLEX
청각장애인	352	350	204	375

3. 제출서류 등 안내

- ① (제출서류) 의사진단서 원본*(의사소견서 불인정)

* 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발급된 진단서 원본만 인정

- ② (발급기관)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,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

③ (의사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)

(가)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 ☞ 예시표 표시 내용 ①

(나) 장애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☞ 예시표 표시 내용 ②

* 장애정도 판정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42호)에 따라 검사

(다)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☞ 예시표 표시 내용 ③

<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>

상기인은

- ①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과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평균도를 검사한 결과,
- ②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이상이며,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평균도가 30%인 사람으로서
- ③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 합니다.

4.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

① (신청·제출 : 응시자 → 경상북도)

- 해당 시험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*하고, 유효한 기간 내에 있는 진단서 원본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등기우편 제출

* 예 : (체크)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

※ 제출처 : [우편번호 36759]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, 경북도청 인사과 인재채용팀
(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(발송분)까지 유효)

※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[별표1]에 따른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(기준23급)으로 등록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 불필요

② (대상 확인 : 경상북도 → 응시자)

- 진단서 내용을 토대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 후,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한해 자료 보완 요청 등 추가 안내 예정

③ (인정기간)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신청한 해당 시험에 한함

- 매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(신청)하되, 진단서는 최초 1회 제출하면 진단서 유효 기간 내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제출 불필요

5. 유의사항 등 안내

-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기준과 관련해 허위 또는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왜곡하거나,
- 의사진단서 등을 위·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.

- 기준점수(등급) : 한국사능력검정시험(국사편찬위원회) 2급 이상
- 인정범위
 - 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점수(등급)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
 -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
- 성적 제출방법
 -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, 인증번호,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함
※ 필요 시 진위확인을 위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
 -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**추가등록기간 [2024. 10. 28.(월) ~ 11. 1.(금)]**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(<https://local.gosi.go.kr>) “능력검정시험 성적제출” 메뉴에서 성적을 등록해야 함